



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이루는 각 분야별 제도 선진화를 위해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자본시장법)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함.

- 2009년 2월 규제 개편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자율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자본시장법이 시행되었으나, 선진 투자은행 출현 등 기대하였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.
-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자본시장과 산업이 자율적인 기반 위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함.

■ 동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,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, 직접금융 및 주주총회 내실화,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 선진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음.

-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자본과 위험관리 능력 등에 있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 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정의하고, 이들이 기업 신용공여, 비상장사 주식 내부주문 집행¹⁾, 헤지펀드 대상 자금지원 등의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.
-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을 위하여 대체거래시스템(ATS)²⁾을 도입하고, 대체거래시스템이 거래소로 전환될 수 있도록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.
- 상장기업의 조건부 자본증권³⁾과 독립워런트⁴⁾ 발행을 허용하고, 주주배정 뒤 실권주 임의처리를 제한하며, 예탁결제원의 대리 행사(shadow voting) 제도⁵⁾를 2015년부터 폐지하는 등 직접금융 및 주주총회 내실화를 추진함.
- 자산운용산업 규제 선진화를 위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, 자산운용산업간 경계 명확화, 신탁업 규제 정비, 펀드 규제 완화 방안 등도 제시함.

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, 금융위, 7/27)

1) 투자은행이 거래소나 대체거래시스템을 통해 고객주문을 집행하지 않고 투자은행 내에서 다수 고객의 주문을 집행
 2)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증권시장 같은 기존 거래소와는 별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
 3) 해당 증권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
 4) 미리 정한 가액 등에 따라 신주 발행 등을 상장기업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콜옵션
 5) 정족 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임의로 행사하는 제도